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95 |
|----------|-----|

제출년월일 : 1999. 11. 1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사유

중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 공포(1999.2.8 법률 제 5839호)되어 1999년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과태료의 부과 . 징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3. 본 문 : 불임 참조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